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96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강대식 · 박준태 · 조지연

최수진 · 이인선 · 백종현

김장겸 · 고동진 · 김상훈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군인의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승인받지 않고 국외여행 등을 하는 군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이 허가된 여행기간 등의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휴가 등의 보장)”을 “(휴가 등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이하 이 조에서 “국외여행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국외여행등의 허가를 받은 군인이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등의 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인이 국외여행등의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국방부장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등의 허가기준·절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수사기관에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여행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여행등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이하 이 조에서 “국외여행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 부장관,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④ <u>국외여행등의 허가를 받은 군인이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에도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기간만료일 전까지 기간연 장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⑤ <u>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등의 허가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u>
<u><신 설></u>	⑥ <u>군인이 국외여행등의 허가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 지 아니할 경우, 국방부장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u>

<u><신 설></u>	<u>한다.</u> <u>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u> <u>외여행등의 허가기준·절차, 제</u> <u>5항 및 제6항에 따른 법무부장</u> <u>관·수사기관에의 통보 절차</u> <u>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	--